항공분야 행정처분 사례집

안전한 하늘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들어가며

항공종사자와 관계인 여러분,

항공안전은 여러분의 기본이며 자존심입니다. 다른 산업분야와 다르게 항공산업은 고도의 훈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첨단분야 산업입니다.

이러한 자긍심은 민·관이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고에도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에 의미를 두자면 '감소' 입니다. 사례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소가 아닌 훈련과 교육을 통한 '감소'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집을 통해 항공종사자 및 관계인등이 항공안전법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안전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안전 및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 자세한 행정처분 절차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행정처분 관련 법조항

1)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별표 목록

2. 행정처분(‘13 ~ ‘17년) 현황

3.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유형

1) 운항분야

2) 감항분야

1. 행정처분관련법조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 · 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 관리하고, 자격증명에 대한 처분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지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처분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1. 행정처분관련법조항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별표 목록>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5조 관련)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2제1항 관련)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19조제1항 관련)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3]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21조제1항 관련)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4]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22조제1항 관련)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 관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항공종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97조제1항 관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제265조 관련)

2. 행정처분('13~ '17년)현황

<항공분야 행정처분 년도별 현황('13～'17년)>

년도	업체	종사자			년도별 합계
		조종사	정비사	합계(종사자)	
2013	5	1	4	5	10
2014	7	5	3	8	15
2015	7	4	1	5	12
2016	31	17	16	33	64
2017	12	5	8	13	25
				총 합계	126

항공분야 행정처분 년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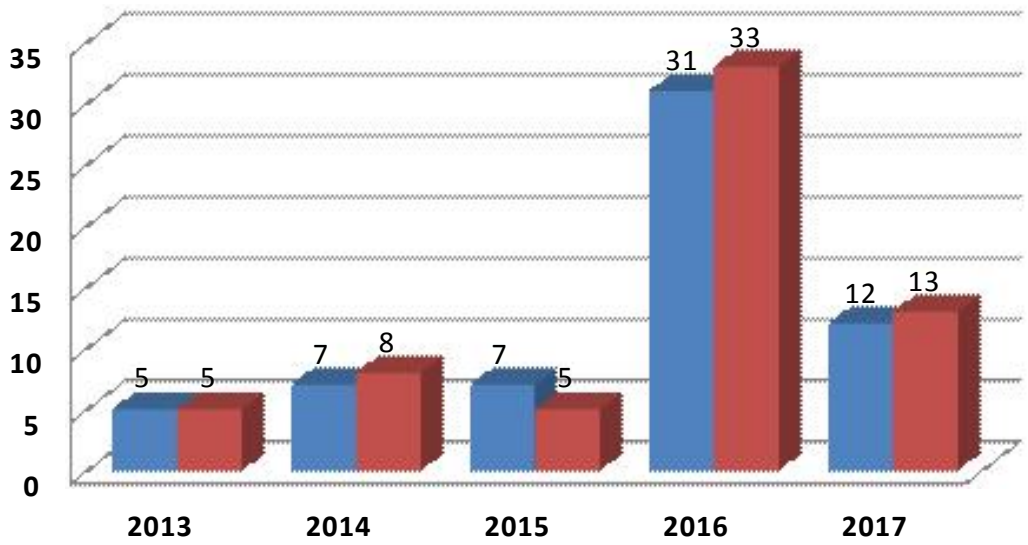

업체 | 종사자

3. 자주발생하는행정처분유형(운항분야)

● **기장의 항공기 출발전 확인 의무 위반**

-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준비(각종 서류 작성 및 탑재)가 미흡한 상태에서 운항한 사례들

<관련 법규>

항공안전법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②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
8.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 점검
3. 발동기의 지상 시운전 점검
4. 그 밖에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3. 자주발생하는 행정처분 유형(운항분야)

● 관제지시 위반

- 항공안전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3조에서 정한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관제공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사례

<관련 법규>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제출·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항공안전법 제173조(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 법 제67조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 900미터(3천피트)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 C 또는 D등급의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2. 관제비행장의 부근 또는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3.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안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空對地通信)을 유지·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계획의 변경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주발생하는 행정처분 유형(감항분야)

● **감항성개선지시 미수행**

- 항공기등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AD)를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기한 내 미수행한 사례

<관련 법규>

항공안전법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35]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위반행위 중 영 별표 3 제2호보목2)·3) 및 이 규칙 별표 34 제35호나목·다목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요한 사항 위반행위

36) 감항성 개선 지시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주발생하는행정처분유형(감항분야)

● **제작사에서 발행한 정비교범 미준수**

- 항공기등을 정비함에 있어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르지 않고 점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

● **사용한계품 사용기간 초과**

-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부품 사용한계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 **비인가 부품 사용**

- 비인가 부품을 항공기에 장착한 사례

<관련 법규>

항공안전법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35]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위반행위 중 영 별표 3 제2호보목2)·3) 및 이 규칙 별표 34 제35호나목·다목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요한 사항 위반행위

38) 비승인 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39)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 또는 지침서 및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방법 등에 따르지 않고 항공기등을 정비(예방정비를 포함한다) 또는 개조한 경우

41)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 또는 정비프로그램 등에 따라 시한성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